##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

지약 업체  수의계약 근거  타고용 등 이 확인사항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, 근로자,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(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·국 본부·시연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자)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 : □ 확인 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 및 행정포털 e-인사마당에서 확인 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 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작인  등 학원 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- 수의계약 체결 표가(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) : □ 확인 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- 학리 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학인  - 학계약 체결 불가 : □ 확인 - 현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 (http://contract.seoul.go.kr) > 계약정보 〉 조회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- (공직자 이해충들 병지제도 운영지침」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: □ 징구		
제약 업체  수의계약 시유  퇴직공무원 교용 등 여부 확인  ○ 확인사항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, 근로자,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(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·국·본부·사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재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채결 불가: □확인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 및 행정포털 e-인사마당에서 확인 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 ○ 확인사항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·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(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): □확인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자리 학생 등 신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: □확인 - 예약적으로 연간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한 경우 위 사유 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 (http://contract.seoul.go.kr) 〉계약정보〉 조회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○ 확인사항 - [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]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	계약건명	
수의계약 근거	소요 예산	
수의계약 사유 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의 확인사항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, 근로자,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(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·국·본부·시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재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:□확인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 및 행정포털 e-인사마당에서 확인  아 확인사항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·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(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):□확인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등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○ 확인사항 -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:□확인 - 예외적으로 연간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 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 (http://contract.seoul.go.kr) 〉계약정보〉 조회  수의계약 체결 제하대사 확인  ○ 확인사항 - 「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	계약 업체	
되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	수의계약 근거	
되작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, 근로자,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(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·국본부시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자)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: □ 확인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 및 행정포털 e-인사마당에서 확인 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·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(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): □ 확인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- 확인사항 -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: □ 확인 - 예외적으로 연간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○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 (http://contract.seoul.go.kr) 〉계약정보 〉 조회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- 「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	수의계약 사유	
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 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·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(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): □ 확인  의학인방법: 서울계약마당(직원용)에서 확인  -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: □ 확인  - 예외적으로 연간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 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- 확인방법: 서울계약마당 (http://contract.seoul.go.kr) 〉계약정보〉 조회  - 주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- 「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	고용 등	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, 근로자,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(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·국·본부·시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자)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 : □ 확인
동일업체       -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: □ 확인         계약조회       - 예외적으로 연간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 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       ○ 확인방법 : 서울계약마당 (http://contract.seoul.go.kr) 〉 계약정보 〉 조회 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	적발업체	-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·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(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): □ 확인
수의계약 체결   - '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한대상 확인		-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불가: □ 확인 - 예외적으로 연간 실·국·본부·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
		- 「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

(서명 또는 인)	성명 :	직급 :	담당 :
(서명 또는 인)	성명 :	직급 :	팀장 :
(서명 또는 인)	성명 :	직급 :	부서장 :